

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10일
신고인	성명 (대표자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
	법인명	전화번호		
	주 소			
시설 개요	명 칭	시설 종류		
	소 재 지			
	시설장 성명	생년월일		
시설 설비				
종사자				

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고인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법인의 정관 2. 임대차계약서(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.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5.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및 수지에산서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건축물대장등본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재	→	신고증 작성	→	발급
신고인		특별자치시· 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		특별자치시· 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		특별자치시· 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		특별자치시· 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		신고인